

지역 공정 주택 공무원을 확인하는데 사용

지역정보지에 1년에 최소 1회 출간되어야 하며 대중적으로 알려야 함



공정 주택 공무원의 통지 및 (시당국의 이름)의 민원 처리

이 통지는 (시당국의 이름)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국가적 기원, 종교, 가족 상황(아이동반 가족), 또는 결점(장애인)에 따라 다음의 행동들을 당하고 있는 모든 거주민에게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의 행동은 제 VIII 시민권리조례 1968(연방 공정주택조례)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Pennsylvania 인간관계 조례가 혈통 및 나이의 계층에 추가적인 보호가 되었음.

- 어떤 사람과 매매 또는 임대, 거래 또는 협상의 거부
-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에서 조건의 차별함
- 특정한 인종, 피부색, 성별, 국가적 기원, 종교, 가족 상황, 또는 결점(장애인), 연령 및 혈통만 이용 가능한 주택으로 광고함으로써 차별함
- 실제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점검,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함
- 소수 민족들이 이웃으로 시킨다고 만들어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자를 설득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블록버스팅
- 금융 기관에 의해 주택 다른 조건이나 상태를 만들거나 거부함
- 특정한 부동산 서비스, 엠엘에스 또는 주택의 매매 및 임대와 관련된 기타 기관에 참여나 사용을 거부함

귀하가 장애가 있거나 어떠한 통지에 접근하는데 합당한 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공정 주택 공무원에게 연락해주시오.

귀하가 제한적 영어 구사자이거나 문서의 번역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공정 주택 공무원에게 연락해주시오.

모든 거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시당국의 이름)의 공정 주택 공무원으로 _____(사람

성명)

지정됨 및 어떠한 상기 조건에서 차별 받는다고 믿는 거주민이
다음에서 공정 주택 공무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음 주소:

공정 주택 공무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